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1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이상휘
김용태 · 김태규 · 김승수
김정재 · 김기현 · 김성원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된 개별 학교의 활용계획(이하 “폐교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교 활용계획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교(이하 “장기 미활용 폐교”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는 폐교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이하 “재수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 수립(재수립을 포함한다) 시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하고, 협력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 교육감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5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장기 미활용 폐교의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가 제5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시설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지 사용허가·대부 등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폐교 활용계획의 수립·재수립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 시기 및 공개 방법, 협의체 구성·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교인 학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된 개별 학교의 활용계획(이하 “폐교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교 활용계획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시·도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교(이하 “장기 미활용 폐교”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는 폐교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이하 “재수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u> <u>④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u>

계획 수립(재수립을 포함한다)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
여야 하고, 협력적인 활용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역 주민 등이 참
여하는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 교육감은 장기 미활
용 폐교를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기 미활용 폐교를 제5항에 따
라 공익목적의 시설로 활용하
는 경우 장기 미활용 폐교의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기 미활용 폐교가 제5항에 따
라 공익목적의 시설로 원활하
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지
사용허가·대부 등 행정적 절
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2. (생 략) <u><신 설></u> 3. ~ 5. (생 략) ④ · ⑤ (생 략)	⑧ <u>그 밖에 폐교 활용계획의 수립·재수립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시기 및 공개 방법, 협의체 구성·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미활용 폐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u>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